

의안번호	2201941
의 퇴 인	문대림의원
회 답 일	2024. 8. 29.
추 계 번호	24B2142

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1조제4항 신설(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<u>학교·기관 또는 단체</u> 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<u>산학협력사업</u> 에 대하여 연구 등에 <u>필요한 경비</u> 를 지원할 수 있음(제4항)	재량규정
2	안 제14조제10항 신설(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확인 및 평가</u> 할 수 있음(제10항)	재량규정
3	안 제19조의2 신설(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<u>다음 각 호의 사업</u>을 할 수 있음(제1항) 1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.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4.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<u>대학, 연구기관, 공공기관, 기업</u> 등에 대하여 <u>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</u>하거나 <u>지원</u>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4	안 제20조의2 신설(금융지원 등)	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<u>채정 및 금융지원</u>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1	안 제11조제4항 신설(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)	×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4조제10항 신설(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)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
3	안 제19조의2 신설(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)		
4	안 제20조의2 신설(금융지원 등)		

2. 상세 사유

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(안 제11조제4항 신설),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(안 제14조제10항 신설),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(안 제19조의2 신설) 및 금융지원 등(안 제20조의2 신설)

□ 국회는 제21대국회에서 농업과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을 제정함¹⁾

○ 농림축산식품부는 법 제정 이전부터 다양한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을 실시 중이며, 현행법은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임

- (목적)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·정밀화·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업·농촌의 성장·발전에 이바지함
- (관련 사업)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,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, 스마트축산단지 조성,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등

※ [참고자료]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참고

□ 개정안은 최근 시행('24.7.25.)된 현행법에 스마트농업 관련 산학협력사업 지원, 연구개발 및 재정·금융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

○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—산학협력사업 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(안 제11조제4항 신설)

1) 의안번호 제2118195호, 「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정부)」

- 가결: 2023.6.30.(제21대국회 제407회 제7차 본회의)
- 공포: 2023.7.25.(법률 제19570호)
- 시행: 2024.7.25.

-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의 지정 등—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 확인 및 평가(안 제14조제10항 신설)
 -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—창업지원, 판로개척 등 및 비용 출연·지원(안 제19조의2 신설)
 - 금융지원 등—스마트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 실시(안 제20조의2 신설)
-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향후 산학협력사업 연구 규모, 스마트농업관련 기업 수요 및 구체적 지원단가, 확대되는 금융지원 규모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-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스마트농업 기본계획²⁾을 수립할 계획이며, 향후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재정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

2)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중임
 - 용역명: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방안 연구
 - 연구기간: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(최초공고: 2024.3.19.)
 - 용역금액: 6천만원
 (자료: 조달청 나라장터 <www.g2b.go.kr>)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예산 현황

(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)

<스마트농업 관련 예산 및 결산: 2022~2024년>

(단위: 백만원)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2	2023	2024
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(2220-376)	스마트영농 확산기반 구축	노지작물 주산지에 스마트농업 기반조성, 시설장비 및 ICT 기반 서비스·솔루션 등 지원	9,240	4,515	16,060
	사업단 운영	단지운영 및 실증구역 관리, 농업인 교육·컨설팅 등을 위한 사업단 운영 지원	1,000	975	1,500
	데이터 수집·활용	단지에서 생산된 다양한 데이터 수집·활용을 위한 데이터 구축, 영농서비스 개발 지원	—	210	420
	소계		10,240	5,700	17,980
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(3034-370)	온실신축 및 시설보급	시설농가 스마트팜 온실 신·개축, ICT융복합 장비, 시설원예 현대화, 에너지절감시설 지원	6,765	20,109	19,104
	사업운영 및 컨설팅	시설 농가별·품목별 최적화된 스마트팜 시설·장비 도입을 지원	437	450	427
	소계		7,202	20,559	19,531
농업자금 이차보전 (1038-301)	스마트팜 종합자금*	스마트팜 시설 설치 및 운영을 희망하는 일반 및 청년농업인에게 필요한 자금 지원	100,000 (2,680)	100,000 (6,469)	100,000 (7,494)
	소계		100,000	100,000	100,000
과수생산유통지원 (3034-304)	과수분야스마트팜확산	과수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시스템 등 지원	280	240	280
	소계		280	240	280
축사시설 현대화 (3760-332,346)	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	축산농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위해 축산 경영에 필요한 ICT 기반의 스마트축산장비 및 그 운영시스템과 전문 컨설팅 지원	84,146	75,481	63,193
	스마트축산단지조성	지역의 노후·난립 축사를 ICT 인프라를 구비한 단지로 집적화하는데 필요한 전기·도로 등의 기반조성 및 관제센터 건립 지원	9,183	13,344	1,575
	소계		93,329	88,825	64,768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2	2023	2024
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(2220-370)	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	ICT기술이 융복합된 생산·유통시설 단지 조성에 필요한 용수, 전기, 부지 정리, 도로 등 기반 시설 지원	3,273	5,935	5,935
	소계		3,273	5,935	5,935
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(2220-380)	보육운영비	스마트팜 취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대상 실습위주 장기교육 제공	8,000	8,000	8,000
	실습농장조성	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실습농장 조성	—	—	—
	소계		8,000	8,000	8,000
스마트팜 실증단지 (2220-386)	전문실증지원서비스	혁신밸리 내 스마트팜 기자재 실증, 재배환경별 생육실증 등 전문실증서비스 지원 및 데이터 서비스 지원	3,806	3,806	3,614
	기술혁신지원서비스 제고	혁신밸리 내 청년농과 기존농업인과의 멘토링, 혁신밸리 운영 매뉴얼 개발 등 운영기반 확대 지원	560	560	460
	실증기업 지원	실증단지 참여기업 대상 실증비용 지원	4,000	4,000	2,000
	자문단 운영	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및 운영, 스마트농업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자문단 운영	60	60	30
	실증온실 조성	혁신밸리 내 실증온실 조성	—	—	—
	지원센터 조성	혁신밸리 내 지원센터 조성	—	—	—
	실증장비 구축	혁신밸리 실증단지 내 실증장비 구축	—	—	—
	소계		8,426	8,426	6,104
임대형 스마트팜 (2220-383)	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	혁신밸리 외 지자체 소유 부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	33,000	49,000	28,000
	혁신밸리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	혁신밸리 내 여유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기존농업인에게 임대	8,000	11,000	3,000
	비축농지 임대형 스마트팜	농지를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농지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설치 후 청년농에게 임대	—	4,500	6,000
	혁신밸리 임대형 스마트팜	혁신밸리 내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청년농에게 임대	—	—	—
	소계		41,000	64,500	37,000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2	2023	2024
바이오첨단 농업 복합단지 (2220-384)	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	지자체에 농수산 융복합 재배기술 확산 및 채종·기능성 작물단지 조성 지원	2,535	3,806	—
	소계		2,535	3,806	—
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(1067-330)	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	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여 첨단 무인·자동화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농업생산 시범단지(미래형 농경지 조성, 첨단 무인시설물, 원격 통합 플랫폼 구축 등) 조성	7,513	7,512	—
	소계		7,513	7,512	—
농산업 수출 활성화 (2260-375)	스마트팜 패키지 지원	스마트팜 기자재·인력·기술 등을 패키지 화하여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을 활성화하고, 스마트팜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	1,769	2,733	2,843
	소계		1,769	2,733	2,843
스마트팜 ICT 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사업 (2220-377)	국가표준적용 설계 및 컨설팅 지원	국가표준 기반의 스마트팜 제품 개발을 위한 기획, 사업·회계관리 등의 컨설팅 지원	500	350	350
	제품개선 및 시제품 제작	국가표준을 적용한 시제품 제작 및 제품개선 지원	2700	2700	1,890
	검정바우처 지원	스마트팜 ICT 제품 및 관련 기자재의 성능, 안전·호환성 등의 검정 및 KC인증 지원	350	250	189
	스마트팜 표준화지원센터 운영	스마트팜 표준화 요소 발굴, 표준화포럼 운영, 표준적용 우수 제품 농가 실증 지원 등	300	420	380
	홍보 및 성과 관리	스마트팜 기자재 표준 확산 홍보 및 성과 관리	250	250	241
	스마트팜 기업 재직자 전문교육 운영	스마트팜 기업의 재직자 대상 전문교육 운영	900	850	765
	소계		5,000	4,820	3,815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2	2023	2024
ICT융복합 및 농림통계체계 구축 (2220-504)	농식품ICT용 복합촉진	농업인, 기업 등이 수집하는 스 마트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 고,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등 개발 지원	3,210	3,210	2,868
	데이터기반 스 마트농업 생태 계 조성	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해결이 필요한 스마트농업 관련 과제 발굴을 위한 스마트농업 AI 경 진대회 개최	1,000	1,494	1,494
	소계		4,210	4,704	4,362
데이터기반 스 마트농업 확산 지원사업 (2220-390)	스마트농업 서 비스 솔루션 지원	농업 현장에서 농업인이 직면하 고 있는 핵심 문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솔루션·서비스를 농가에 적용 및 고도화 지원	5,935	5,935	5,935
	성과분석·홍보 비	데이터 기반 서비스 지원사업 성과분석, 우수사례 홍보, 사업 평가 등 지원	300	300	300
	소계		6,235	6,235	6,235
농업농촌교육 훈련지원 (1130-331)	스마트팜 확산 지원(현장실습 형 교육)	스마트팜 활용 확산을 위해 실 습 중심의 교육 운영	360	360	180
	스마트팜 확산 지원(권역별 현장지원센터)	권역별 스마트팜 현장지원센터 를 운영을 통해 농가의 현장 기 술지도, 사후관리, 홍보 등을 지 원	600	600	300
	소계		960	960	480
스마트팜 다부 처 패키지 혁 신기술개발 (2280-481)	스마트팜 실 증·고도화 연 구	선도농가 중심의 1세대 스마트 팜과 시제품 수준인 2세대 스마 트팜 기술수준 고도화 및 현장 착근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천경 제 활성화 및 스마트팜 보급 확 산	9,160	9,160	7,641
	차세대 융합· 원천기술연구	스마트팜 기자재 국산화 및 기 술수준 향상을 통해 선도적 입 지 선점 및 글로벌 K-Farm 모 델 확대를 위한 융합·원천기술 개발	10,980	10,980	8,138
	기획평가관리 비	연구개발사업 관리를 위한 기 획·평가·관리비	—	—	—
	소계		20,140	20,140	15,779

세부사업	내역사업 (내내역사업)	주요내용	2022	2023	2024
노지분야 스마트농업 기술단계 고도화 (2280-491)	자율주행 농기계 핵심부품 국산화	노지농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주요 농기계(트랙터 등)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·부·장 국산화 및 자율주행 기반 확립	3,750	5,000	3,562
	노지농업 정밀 측정 기술 국산화	식량작물, 채소, 과수 등 총 6종의 대표품목 디지털농업 구현을 위한 데이터 생산·수집·저장·가공·분석·서비스 등 전주기 활용체계(모델) 개발	4,700	6,265	5,739
	농업용 로봇 현장 적용기술 개발 및 실증	주요 노지 작물 수확 및 보조(운반, 이송) 기기, 생육 환경별 제초 플랫폼 개발 및 적용 범위 다변화, 주요 농작업 모사·보조 등	3,776	5,035	4,632
	소계		12,226	16,300	13,933

*) 스마트팜 종합자금은 대출 실행 후 금융기관에 이차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연간 용자규모로 기재함. ()은 연간 용자규모에 따른 이차보전액 추정치 및 당해연도 실제 용자실행에 따른 이차보전 발생액(이차보전액은 기준금리, 대출실행률, 대출시점(평잔)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과부족액 발생)
 자료: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